

의안번호	2217465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6. 4. 8.
추계번호	26F1574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세관행정 지원 근거 마련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운영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8,500만원, 2028년 1,400만원, 2029년 1,400만원, 2030년 1,400만원, 2031년 1,400만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2억 4,100만원 (연평균 4,82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65	—	—	—	—	65	13
제11조(지원조직 등) 제2항	14	14	14	14	14	70	14
제12조(실태조사)	106	—	—	—	—	106	21.2
합 계	185	14	14	14	14	241	48.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세청장은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세관 당국 간 협력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2	제11조(지원조직 등) 제1항	통관애로 해소 지원활동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운영	
3	제11조(지원조직 등) 제2항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또는 위원회 운영	
4	제12조(실태조사)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활동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첨부 사유)
1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
2	제11조(지원조직 등) 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정안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며,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전담부서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지 또는 직제개편을 통해 기존 인력을 추가 활용하는 형태가 될지 예상할 수 없음
3	제11조(지원조직 등) 제2항	○	-
4	제12조(실태조사)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2조에 따른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관련, 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세청장이 종합대책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관세청 및 타기관에서 수립한 유사 사례의 연구용역비 단가 평균 예산을 준용함
- 안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또는 위원회 운영 관련, 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세청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1회당 개최 비용 및 1회당 운영비용을 준용함
- 안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종합대책 수립 주기에 맞춰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타기관 유사 사례의 실태조사 예산 규모를 준용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과 법안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안 제6조)

(1) 추계방법

- 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세청장이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세관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관세청은 위기대응상황(코로나19, 요소 등 광물수출통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기에 단발성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종합대책을 연례적·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유사사례가 없음
- 종합대책 수립 예산은 1회 6,500만원 수준으로 가정
 - 관세청 및 타기관 유사사례를 고려함
 - ① 관세청 유사사례: 「탄소배출 규제정책 대응 전략 수립 및 관세청의 역할 연구」(관세청, 2024년)¹⁾ 5,000만원
 - ② 타기관 종합계획사례: 「제3차 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²⁾ 수립방안」(산업통상자원

1)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20240708953 - 000)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부, 2022년)³⁾ 8,000만원

(2) 추계결과

- 제정안 제6조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는 2027년 6,500만원 등 2027~2031년간 총 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표 4]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시행)	65	-	-	-	-	65
합계	65	-	-	-	-	65

나. 민간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제2항)

(1) 추계방법

- 제정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세청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위한 민간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원을 10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제3차 관세청 미래성장혁신 위원회」(2026년) 개최 계획을 준용함
- 제정안에 따라 민간 협의체 또는 위원회 운영시, 1회당 운영비용은 총 7백만원으로 가정
- 위원수당⁴⁾ 3백만원(30만원×10인)

재심사 등

10. 삭제 <2016. 1. 6.>

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연구

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무역구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무역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이하 “무역구제등”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20220627451 - 000)

- 회의책자 등 자료준비 2백만원
- 기타 행사비용 2백만원

(2)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민간 협의체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 운영비는 2027년 1,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7,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4] 민간 협의체 또는 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제11조(지원조직 등) 제2항	14	14	14	14	14	70
합계	14	14	14	14	14	70

다. 실태조사(안 제12조)

(1) 추계방법

- 제정안에는 명시되지 않으나, 관세청장이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세관 당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실태조사 주기는 앞서 가정한 종합대책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타기관 유사사례의 실태조사 예산 규모를 고려함
 - － 「해외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연구」(산업통상자원부, 2025년)⁵⁾ 1억 6백만원

4)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406

□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200,000원(서면심사 150,000원)을 지급하되,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 가능함
 ○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01-01목)로 지급할 수 있으며,
 ○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5)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입찰공고번호: R25BK00781498 - 000)

(2)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027년 1억 600만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1억 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

[표 4]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제12조(실태조사)	106	-	-	-	-	106
합계	106	-	-	-	-	106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추후 사업 세부내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